

|                                                                                                   |                                        |      |                |
|---------------------------------------------------------------------------------------------------|----------------------------------------|------|----------------|
| <br><b>과학기술부</b> | 이 資料는 '04.11.25(목) 夕時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b>보도자료</b><br>□□□□□□□□□□□□            | 생산일자 | '04. 11. 23(화) |
|                                                                                                   |                                        | 매 수  | 총 7 매          |
|                                                                                                   |                                        | 제 공  | 과학기술부 공보관실     |

##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과학기술부는 25일(목)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장: 吳 明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 관계부처 장관)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계획」,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였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분야별 책임장관제 운영에 맞추어 각 부처의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정책 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과학기술 관계 부처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현재 5개 부처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는 7개의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인증과 신제품(NEP) 인증의 2개 제도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과 현재 22.1개월인 특허심사대기기간을 2006년까지 10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다.

-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신속한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고, 신기술 인증제도 이용의 편리성과 인증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향후 운영방향과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방안도 논의되었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2개 관계 부처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기획수석·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붙임

1.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위원 명단
2.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 
- 문의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종합기획과  
오대현 사무관 (02-2110-3763)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위원 명단

| 구 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비 고 |
|-----|-----|---------------|-----|
| 의 장 | 오 명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     |
| 위 원 | 이헌재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
|     | 안병영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     |
|     | 윤광웅 | 국방부장관         |     |
|     | 허상만 | 농림부장관         |     |
|     | 이희범 | 산업자원부장관       |     |
|     | 진대제 | 정보통신부장관       |     |
|     | 김근태 | 보건복지부장관       |     |
|     | 곽결호 | 환경부장관         |     |
|     | 강동석 | 건설교통부장관       |     |
|     | 장승우 | 해양수산부장관       |     |
|     | 김병일 | 기획예산처장관       |     |
|     | 한덕수 | 국무조정실장        |     |
|     | 김영주 | 정책기획수석        |     |
|     | 박기영 |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
|     | 임상규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 □ 추진배경

- 과학기술 부총리체제 출범과 분야별 책임장관제 운영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책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필요

### □ 구성

- 의 장 : 과학기술부장관
- 위 원 : 재정경제부 등 11개 관련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기획수석·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기능

- 관련 부처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협의·조정

### □ 운영계획

-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조정회의로 구성
  - 실무조정회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을 위원으로 구성
- 협의·조정이 필요한 과학기술혁신정책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

## 2. 과학기술혁신본부 운영계획

### □ 인력 구성방안

- 과기부, 타 부처, 민간의 구성비율은 4:4:2 수준
  - 민간전문가는 공모하되, 겸직·계약직·특채 등으로 채용
- 금년 12월까지 혁신본부 구성을 완료할 계획

### □ 주요 추진과제

-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 등을 총괄·조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
- 국가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 종합조정 체계를 효율화하고, 심의관 역할을 강화
- 성과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확립
  -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 R&D예산 사전조정제도 개선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대형국책사업을 발굴, 타당성 조사 실시 후 '(가칭)대형국책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범부처적 추진
  -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
  - 각 부처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 혁신본부는 총괄·조정
- 인력양성 종합조정 및 차세대 핵심인력 확보
  - '과학기술인력양성 공동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 3. 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

#### □ 추진배경

- 제4회 국무회의시('04.1.20) '정부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기술의 활용방안'의 수립 필요성 제기

#### □ 신기술 인증제도 현황

- 각 부처에서 10여개의 인증제도를 운영중이나, 대표적인 인증제도는 5개 부처의 7개 제도(KT, NT, EM, EEC, IT, ET, CT)임
  - 도입이후 10여년간 기업성장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해 왔으나 유사한 인증마크 분산,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 대두

#### □ 개선방안

- 현재 운용되고 있는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2개 유형의 인증제도 신설
-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신제품(NEP) 인증시 별도의 기술심사 면제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을 받은 경우 금융·조세·인력 등 각 부처의 지원제도 활용시 동일한 가점 부여
-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심사, 사후관리 등을 DB화 함으로써 신기술 인증제도의 활용도 제고

#### □ 기대효과

-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이용자 편리성 증대

#### □ 향후 추진계획

- '05년중 5개 부처별로 관련법령 개정('06년부터 적용 추진)

## 4.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 □ 추진배경

- 기술변화 속도의 증가로 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지만 특허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 저해

###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특허·실용신안의 세계 4대 출원국으로 부상  
※ '03년 특·실 출원(천건): 일본(413),미국(332),중국(214),한국(159)
- 심사관수 부족, 특허심판조직의 불균형 등으로 심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특허 심사·심판 기간이 장기화  
※ 심사대기기간('03) : 한국(22.1개월), 독일(10개월), 미국(18.3개월)

### □ 추진목표

- '06년까지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 수준으로 단축(심판처리 기간은 '06년까지 6개월 수준으로 단축)

### □ 개선방향

- 심사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등 자구노력 강화
- 특허·실용신안 부문의 심사 인력 확대 추진('05년 220명 수준)
- 신기술 및 융합기술분야 심사조직 신설 추진

### □ 기대 효과

-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권리보호로 기술개발 활동 촉진

### □ 향후 추진계획

-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 수립후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에 보고